

보도자료

2012. 06. 01(금)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www.kaab.or.kr

<자료문의> ☎ 521-1930,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 임창복,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학교육 인증사업 본격 시행

- 개정 건축사법 시행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 -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원장 임창복,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은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는 개정 건축사법('11.5.30 공포, '12.5.31 시행)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학교육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건축사 자격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정 건축사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수준의 건축학교육 과정이수와 그 질적 수준이 전문직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 2005년에 설립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민간 자율기구로서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 해 왔으나 금번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 평가인증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학습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강화하였다.
- 특히,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8년에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기관 간에 체결한 캔버라협약 (캔버라어코드,

Canberra Accord) 정회원자격 취득 및 2009년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UNESCO-UIA)의 인정기관 지정 등 국제기구로 부터 인정 받고 있는 인증기관으로서, 금번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 향후 국제 사회에서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 등 국가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인증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이번 인정기관 지정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개정 건축사법 시행 전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으면 되며, 인증 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4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은 2019년까지 종전의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